

한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2-332번지 일대 한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」에 따라 예비임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29.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1. 열람기간 : 2026. 7. 7.(화) ~ 7. 13.(월) / 5일간(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)
2. 열람시간 : 10:00 ~ 17:00 /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3. 열람장소 :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 재건축팀
4. 기타 안내사항
 - 가.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오기사항이 있을 경우,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별도서식에 따라 오기사항정정 및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명의변경등 기재사항의 누락·오기등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.
 - 다.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0호)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유물건의 경우 대표소유자 1인에게 선거권이 있으므로 대표자 선임동의서(별첨서식1)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투표권이 부여됩니다.

※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대표자 미 선임시 투표권 미부여

라.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0호)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장(별첨서식2)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셔야 투표권이 부여됩니다. 법인인 경우에도 위임장(법인 인감증명서 첨부)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투표권이 부여됩니다.

제9조(선거권 등) ①~② 생략

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 또는 지정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관리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1.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
2.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3.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(법인의 대표자는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)

※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 미 제출 시 투표권 미부여

마. 선거인명부를 임의로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으며,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5. 주관 및 문의 : 구로구청(재건축팀 02-860-2940)